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해제)

1. 회의일시 : 2011. 3. 30.(수) 15: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위 원
신용섭 위 원
양문석 위 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 (2011-21-085)」과 「종합편성 방송 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건 - (2011-21-086)」은 당초 1개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내용이 다른 안건을 분리함으로써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2개의 안건으로 분할하여 재상정·의결함.

1)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 (2011-21-085)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주)씨에스티브이, (주)제이티비씨에 대해서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주)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 김충식 상임위원은 동 안건에 대해 '종편사업자를 4군데나 선정한 것은 광고시장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무책임한 결정이므로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표명 후 퇴장(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양문석 상임위원은 동 안건 의결시 기권의사 표명

- ※ 당초안의 의결주문을 일부 수정함 (3개사의 승인 유효기간 4년 → 3년)

○ 주요내용

① (주)씨에스티브이, (주)제이티비씨 승인조건

- ①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⑦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연합뉴스TV 승인조건

① ~ ⑦, ⑨는 상동

⑧ 최다액 출자자인 (주)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유리하게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2)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에 관한 건」 - (2011-21-086)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신청법인 2개사[(주)채널에이(가칭), (주)매일방송])의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원안대로 '11. 6. 30일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함.

※ 김충식 상임위원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견표명 후 퇴장(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음), 양문석 상임위원은 동 안건 의결시 기권의사 표명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4. 6(수)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17:15) ※ 정회 16:43, 속개 16:55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해제)

1. 회의일시 : 2011. 4. 20.(수) 09:0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성원보고

나. 국민의례

다. 개회선언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 (2011-23-088)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주)채널에이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장 교부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합편성 채널은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권 의사 표명

○ 승인조건(기 승인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동일)

- ①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승인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⑤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⑥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 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 ⑦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⑧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⑨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2011. 4. 25(월)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함.

6. 폐 회 (09:45)

제2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해제)

1. 회의일시 : 2011. 5. 6.(금) 15:30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 가. 성원보고
 - 나. 국민의례
 - 다. 개회선언
 - 라. 회의공개여부 결정
 - 마. 전차회의록 확인

바. 의결사항

1)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에 관한 건 - (2011-27-096)

○ 김준상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주)매일방송의 폐업일자 관련 사항은 제2안으로, 나머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함.

※ 김충식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종합편성 채널은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동 안건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기권 의사 표명

○ 주요내용

① (주)매일방송에 대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되, 승인 유효기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으로 함

- (주)매일방송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주)매일방송이 승인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폐업 예정일자인 2011년 9월 30일로 함

-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연기할 수 없으며, (주)매일방송이 승인장 교부 신청시 제출한 폐업 예정일자 연기 요청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31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결정

② (주)매일방송에 대해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까지 주요주주의 구성 및 지분율이 본 승인 의결시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 다만, 상속·법원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④ (주)매일방송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 동안 다음의 승인조건을 부과함. 승인조건이 기재된 승인장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부함

< 승인조건 >

1. 「방송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요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은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년 간 처분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속·법원 판결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출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승인 의결일(2011년 5월 6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방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사업계획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 방송 언어 순화 계획,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방안
 - 나.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역 밀착형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방안
 - 다.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장애인 지원방안 및 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소수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등 소수 시청자 지원방안
 - 라.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배분 방법 등 콘텐츠 공정 거래 관행 정착방안
 - 마. 국내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방안
 - 바.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계획 등 콘텐츠 산업 육성·지원방안
 - 사. PP 및 유료방송과의 협력 등 유료 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
7. 경영감시기구 및 경영진 구성, 조직 및 인력 구성 등은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성·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방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60%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은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35% 이상 및 주시청시간대 방송시간의 10% 이상 편성하여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이행실적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주)매일방송(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시청자가 보도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로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채널명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에 대해서는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사. 기 타

1)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

- 차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최일시는 추후 결정하기로 함.

6. 폐 회 (16:10)